연명의료결정제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이 콘텐츠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요건 및 절차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의 구분,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意思)를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1
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4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4
1.1.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4
1.1.2.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6
1.2.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9
1.2.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및 내용 9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13
2.1.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3
2.1.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13
2.2.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16
2.2.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16
3. 연명의료의 중단 20
3.1.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20
3.1.1.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20

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1.1.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Q.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17.11.29. 보도자료 참조>

Q.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 '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뿐만 아니라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21년 전 네덜란드서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연합뉴스, 2022. 4. 10.) 및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존엄한 죽음' 화두를 던지다"(서울신문, 2019. 3. 5) 참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 의료기술 등의 발달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일부 의학 기술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때문에 각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등에 의한 사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이를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해당 의료인들에게 **살인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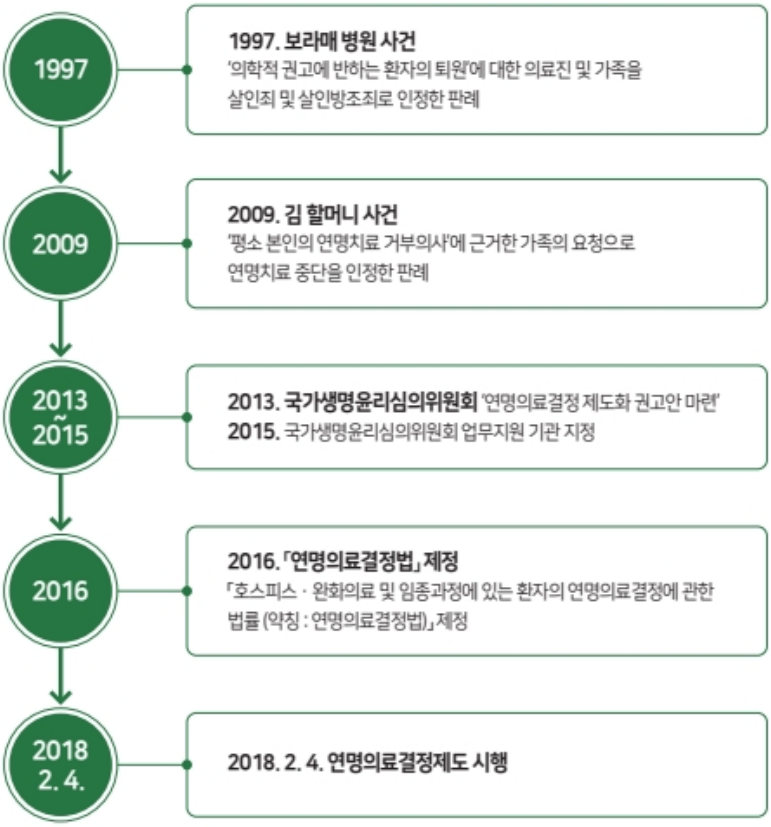
▪ 10여년 뒤인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그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 인식 조사, 관련 연구 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정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 이에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 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보건복지부, 2024), 4~5쪽 참조>



<출처: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 7.), 18쪽 참조>

1.1.2.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없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말기환자의 의미와 진단기준

▪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2024), 34쪽 참조>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 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보건복지부, 2024), 96쪽 참조>

연명의료 행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

연명의료와 시술의 종류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보건복지부, 2024), 36~37쪽 참조].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몸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 흉부 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폐에 공기가 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도삽관으로 인한 치아손실, 목소리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혈액투석	· 신장(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혈관 통로를 통해서 몸 속 피를 일부 뽑아 그 속의 찌꺼기를 거른 다음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어주는 과정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방법 ·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가슴, 목, 사타구니 등에 카테터 삽입술이 시행되는데, 카테터 삽입의 과정에서 혈관 외상, 출혈,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혈액 투석 시 혈액응고제의 사용이 빈번하여 출혈의 위험이 높게 나타남
항암제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 ·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위장장애, 탈모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 일반적으로 기도 확보를 위해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한데,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의 시행과정에서 침습적인 행위로 인해 치아나 기도의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도삽관 및 절개로 인한 통증 등으로 진정제와 승압제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함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체외순환장치[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며, 정맥혈을 뽑아 체외에서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정맥 또는 동맥 내로 주입하는 방법 · 출혈(도관 삽입부 출혈, 위궤양출혈, 뇌출혈), 응고장애, 도관을 삽입한 하지의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 미열이나 피부발진과 같은 경미한 반응 또는 체액 과부하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이 밖에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혈액의 수혈, 알레르기나 급성 폐 손상 등의 심각한 반응,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혈압상승제 투여	·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에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는 것임 · 지속하여 사용 시 사지괴저 등의 유발할 수 있음
그 밖의 연명의료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해당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담당의사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다양한 의학적 시술을 포괄함

▪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참조).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요건

의사의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한 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연명의료의 중단-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1.2.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및 내용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말하며,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부와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으로 1960년대 영국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24. 4.), 2쪽 참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 질환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로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등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에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및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 분	대상 질환	서비스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 말기 암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자원 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임종 관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 말기 암 ·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말기 만성 간경화 · 말기 만성호흡부전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 주·야간 상담전화 · 장비 대여/연계 및 의뢰 서비스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자문형 호스피스		· 신체증상관리 자문 · 생애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 지원 ·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 자원 연계/경제적 지원 ·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 호스피스 입원 연계(말기 암인 경우) · 재가서비스 연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현재 만 24세 이하인 환자에 한해 시범운영중)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 중에서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성인 호스피스와 달리 진단 병명이나 질병 단계에 제한이 없음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신체적 돌봄 · 심리적·영적 돌봄 · 사회적 돌봄 · 의사소통 지원 · 환자 및 가족, 돌봄 제공자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퇴원 지원 · 임종 돌봄 · 사별가족 돌봄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별 정보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별 서비스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내용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출처: 국가암지식정보센터-내가 알고 싶은 암-말기암환자-호스피스란?>.

1. 통증과 같은 신체적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부 병원에서는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7. 사별 가족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8.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및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2.1.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작성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작성자 및 등록기관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사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 ]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 열람 가능	[ ] 열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인)

☞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 전 설명을 충분히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다음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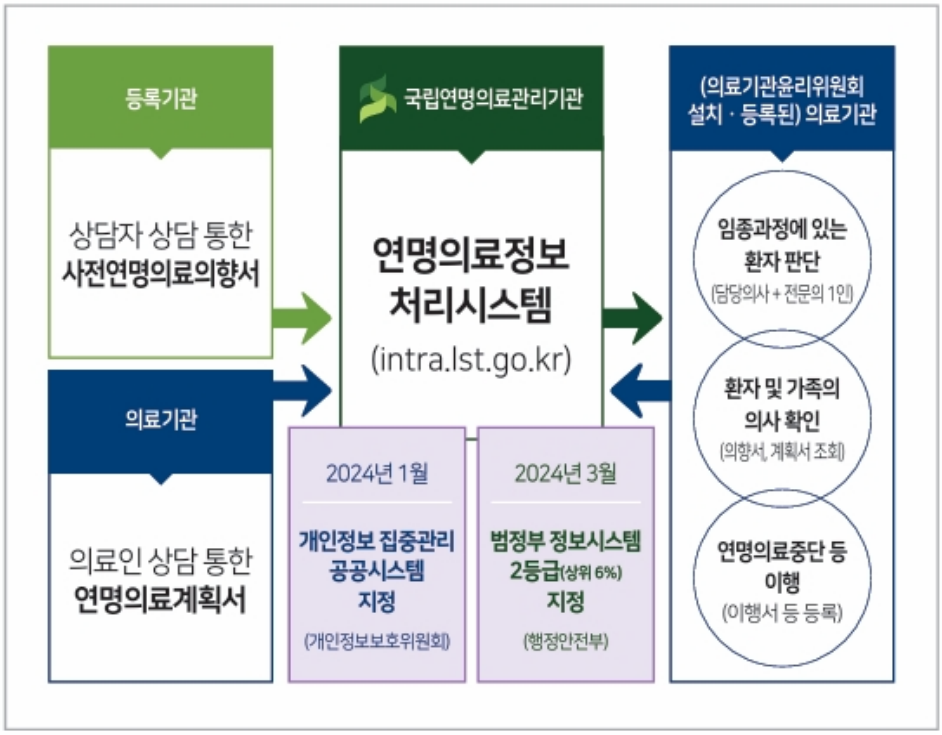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출처: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 7.), 20쪽 참조>

작성 전 설명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조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본문).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음)

2.2.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2.2.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결정제도-주요내용 참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31.>

연명의료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	[ ] 말기환자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호스피스 이용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녹화 [ ] 녹취 ※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 열람 가능	[ ] 열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7.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8.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 각 지역에 위치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계획서-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절차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계획서 참조>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전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후단).

>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보건복지부, 2024), 100쪽 참조>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3. 연명의료의 중단

3.1.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3.1.1.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 대상 환자 판단

▪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알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작성자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참조).

▪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으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며, 다를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보건복지부, 2024), 45쪽 참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받은 시점에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환자의 의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후단).

- 의향서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

> ※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이용자 바로가기-의료인-환자의 의사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 대상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③ 환자가족의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함)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意思)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참조).

▪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④ 환자가족의 전원 합의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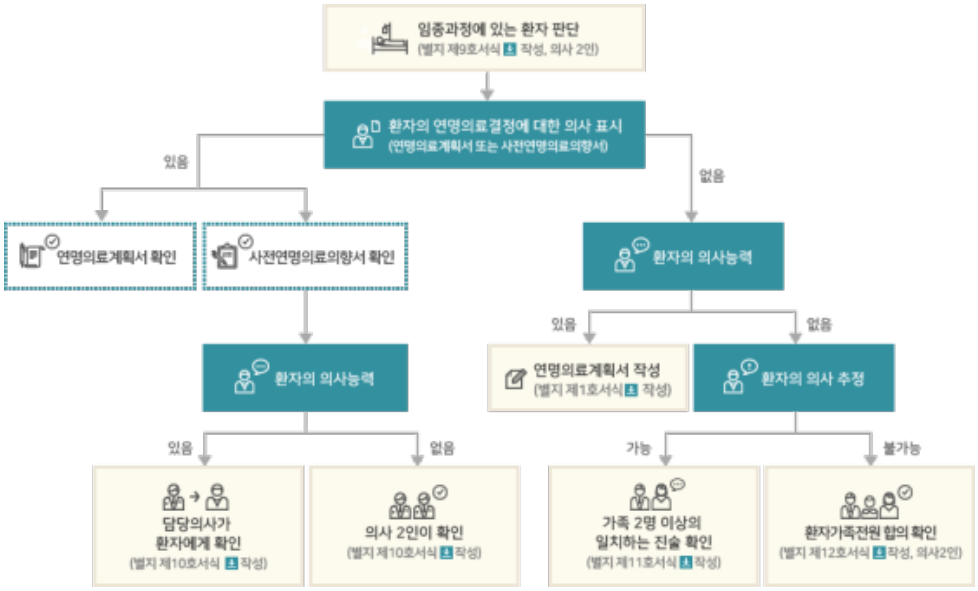
> ※ 전원 합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②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①② 모두 없는 경우 ③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참조).

※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단계	내용
STEP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STEP 2.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STEP 3. 환자가족 2명 이상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STEP 4. 환자가족 전원 합의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참조>

▪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도 참조>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意思)가 확인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이행의 대상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意思)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63쪽 참조).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이행 이후에도 담당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64쪽 참조).

> **Q.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
> **A.**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 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보건복지부, 2024), 97쪽 참조>

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어렵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보건복지부, 2024), 98쪽 참조>

※ 그 밖에 연명의료결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인을 위한 연명의료결정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0.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